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

(공사, 전자 입찰)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사무소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
나.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48번길 42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상호진출 불허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실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아. 기초가격	: 277,508,000원 : 추정가격 : 252,280,000원 + 부가가치세 : 25,228,000원
자.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차.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1.(금) 10:00 ~ 2026. 09. 15.(화) 10: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5.(화)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 규정에 따름

※ [별도발주\(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공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공사 중 시설 파손 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5652)**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구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호)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건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1)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

구분	업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비율
대상 업종	석면 해체·제거업	111,850,000	123,035,000	44%
	실내건축공사업	140,430,000	154,473,000	56%

3) 선순위 건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낙찰·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자기심사표(증빙서류 및 계산식 첨부) 등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수요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계약 진행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예가작성 프로그램 때문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합계 (A값)
3,480,930원	4,599,281원	457,394원	2,227,020	4,292,546원	15,057,171원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서식3]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또는 [서식4]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14.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3, Fax.055-751-5266)
사업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시설관리팀(055-751-557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까.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청구일</th> <th style="width: 15%;">지급기일</th> <th style="width: 20%;">은행명</th> <th style="width: 20%;">계좌번호</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월 일</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 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서식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업 체 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년월일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구분	비고

*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